

[제1-3호서식] <신설 2004.8.20>

(앞 면)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

실명확인 (인)

※납부자께서는
확인하신 후 기재하십시오.
뒷면 유의사항을

납부당사자 사용란	법 원 명				
	사건번호		물 건 번 호		
	납부금액		보 관 금 종 류	보증금	
	납 부 당사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보험계약자				
	잔액환급 계좌번호	은행	지점	예금주	
계좌번호					

위의 보관금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당사자

대 리 인

(인)

<유의사항>

1. 법원의 보증금 최고에 의한 보증회사의 "보증금"은 법원보관금취급점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물건번호는 1개 사건에 2개 이상의 경매목적물이 있고, 일괄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의 매각대금납부시 기재합니다.
3. "보증금" 잔액환급계좌의 예금주는 납부당사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4. "보증금" 납부시 보증회사는 다음 표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주소			

- * 소유자는 "보증금" 관련부동산의 소유자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5. 기재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생긴 손해는 납부자에게 돌아갑니다.
- ※ 보관금 납부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납부자의 주민등록증(대리인 납부시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관금 취급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